

※ 바로 잡습니다.

※ 2022.5.30.까지 발견된 「2022 소득세실무」의 오류에 대한 정오표입니다. 앞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
235 下 3째줄	우에는 108개월) 이상인 경우에는 1호)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(장기일반민간임	우에는 108개월)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(장기일반민간임												
810 上 3째줄	제40(1) 서식 12쪽 3)	제40(1) 서식 12쪽 2)												
919 표 오른쪽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제금액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투자금액의 10%</td> <td rowspan="3"> <u>소득 금액의 50%*</u> </td> </tr> <tr> <td>Min (출자·투자금액, 3,000만원)의 10%</td> </tr> <tr> <td>출자·투자금액의 100%~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제금액	공제한도	투자금액의 10%	<u>소득 금액의 50%*</u>	Min (출자·투자금액, 3,000만원)의 10%	출자·투자금액의 100%~30%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제금액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출자·투자금액의 10%</td> <td rowspan="3"> 종합소득 금액의 50% </td> </tr> <tr> <td>Min (출자·투자금액, 3,000만원)의 10%</td> </tr> <tr> <td>출자·투자금액의 100%~30%*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제금액	공제한도	출자·투자금액의 10%	종합소득 금액의 50%	Min (출자·투자금액, 3,000만원)의 10%	출자·투자금액의 100%~30%*
공제금액	공제한도													
투자금액의 10%	<u>소득 금액의 50%*</u>													
Min (출자·투자금액, 3,000만원)의 10%														
출자·투자금액의 100%~30%														
공제금액	공제한도													
출자·투자금액의 10%	종합소득 금액의 50%													
Min (출자·투자금액, 3,000만원)의 10%														
출자·투자금액의 100%~30%*														
976 上 6째줄	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은 세액공제 또는 <u>필요경비산업*</u> 의 대상이 되는 외국	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업 의 대상이 되는 외국												
976 上 8째줄	* 2021년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기간(10년) 내에는 '필요경비산업 방법'을 적용할 수 없다.	삭 제												
1108 下 1째줄	⑤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된다.	⑤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된다. 다만,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.(조특법 132조 ① 3, ② 3)												
1209 下 2째줄	① 폐업하기 전에 제1호 에 해당했을 것	① 폐업하기 전에 위 '①' 에 해당했을 것												
1249 下 7째줄	③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.	③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. 다만, 100%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 고용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.(조특법 132조 ② 4)												
1283 下 2째줄	이상인 경우에는 1호)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	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												